

논 타작물 생력화장비 지원

▶ 이 사업 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경상북도 스마트농업혁신과 입니다.

담당기관	담당과	담당자	전화번호
경상북도	스마트농업혁신과	과 장 김철수 담당 안중기 주무관 류교정	054-880-3360 054-880-3371 054-880-3368

I. 사업개요

1. 사업목적

- 논에 벼 대신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과잉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식량안보를 위해 식량자급률 제고
- 논 타작물 전환에 필수적인 전용 농업기계 구입 지원으로 농가 부담 경감 및 논 타작물 재배면적 확대를 통한 쌀 수급안정에 기여

2. 지원근거

-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 제1항(자금지원)
-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(농수산업의 경쟁력 제고)

3. 추진방향

- 논콩 재배 확대를 통해 농가소득을 높이고, 논콩 재배 생력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논콩 등 두류 재배 경영체를 우선적으로 지원
- 일정 규모 이상 논 타작물 전환 경영체를 지원하여 이용 효율성 제고
- 밭 식량작물 재배 확대를 통한 식량자급률 향상 기반 마련을 위해 조사료 전환면적은 논 타작물 참여실적에서 제외

II. 사업시행 계획

1. 2026년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26. 1. ~ 12월
- 사업량 : **4개소**
- 사업비 : **200백만원**(도비 30, 시군비 70, 자부담 100)
- 부담비율 : **도비 15%, 시군비 35%, 자부담 50%**
- 지원단가 : **농업경영체당 50백만원**
 - * 경영체당 사업비 범위(50백만원) 내 한 기종 또는 여러 기종 구입 가능
- 지원대상 : 논 타작물 참여면적*이 1ha 이상인 농업인 또는 구성원의 참여면적이 3ha 이상인 농업인 단체(영농법인, 작목반 등)
 - * 참여면적 : 최근 3년 및 '26년 도·시군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신규 참여면적 (조사료 면적 및 타작물 전환 후 벼로 화귀한 면적은 제외 동일필지 중복 합산 불가)
- 사업내용 : 논 타작물 재배에 필요한 수확기, 건조기 등 시설·장비
 - * 지원제외 : 조사료 파종기, 수확기 등 축산분야 시설·장비

2. 사업시행 요령

- 사업주관 : 군수
- 사업신청 : 농지소재지 읍면
- 공급시기 : 농작업 과정별 농업기계 사용전에 공급을 완료
- 공급기종 : 한국농업기계협동조합에서 발행한 “농업기계목록집”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기종으로 **국내산 농업기계 우선 구매 권장**
- 지원대상자 선정 : 논 타작물 참여실적, 타작물 확대 계획, 영농경력, 자부담 확보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되, 아래 ‘우선 선정 기준’을 적용
 - ① 논콩 재배단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5ha 이상 단지를 조성한 농업인 단체 또는 3ha 이상 조성한 농업인 우선 선정
 - ② 두류(논콩) 재배 경영체를 일반작물 재배 경영체보다 우선 선정
- 지원제한 및 후순위
 - 최근 3년간 논타작물 참여면적 3ha 미만 농업인 단체 : 지원제한
 - 최근 3년간 참여면적 1ha 미만 농업인 : 지원제한
 - 최근 5년 내 논타작물 관련 시설·장비를 지원받은 경영체 : 후순위

Ⅲ. 사업추진 체계

1. 사업신청 단계

도

- 논 타작물 전환면적, 사업 수요 등을 기준으로 시군 사업량 배정 (전년 12월중)
- 사업 추진방향 등 해당연도 시행지침 확정·통보(1월중)

시군

- 사업 신청요건, 선정 기준, 신청 기한 등 **시군 자체 세부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관내 경영체에 사업참여 홍보**

경영체

- 지원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고 사업을 희망하는 경영체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 시군(읍·면·동)에 신청 [별지 제1호 서식]
 - * 기종별 기준단가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“농업기계 목록집” 책자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용자지원한도액(실판매가격의 80% 이내)을 참고하되, 적정가격 검토 후 단가 산정
 - ** 복수 비교 견적을 원칙으로 하여 공급가의 투명성 제고

2. 사업자 선정단계

시군

- 시군에서는 경영체에서 제출한 사업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, 그 결과를 도에 제출 및 사업대상 경영체에 통보 [별지 제2호 서식]
 - ※ 경영체가 보유하고 있는 농업기계와 같거나 유사한 기종 신청시 잔여 내용연수와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

3. 사업 시행단계

도

- 시군으로부터 사업 선정결과를 제출받아 사업 계획을 확정하고, 보조금 교부 결정 및 교부

- 사업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실적을 서면 또는 현지 확인 점검 실시 (반기별 2회)

시군

- 시군(읍면동)에서는 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 결정을 통보하고 사업 추진
- 보조사업자 등 사업계획 변경시 승인 후 도에 결과 제출

경영체

- 시장·군수로부터 사업·확정을 통지 받으면 사업계획에 따라 선정된 농업기계를 구입하되,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시장·군수의 승인을 받아 추진 [별지 제3호 서식]
- 자부담 금액을 정부 용자사업으로 지원받을 경우 보조금과 용자 지원금 합계액이 정부용자한도액을 초과되지 않도록 정부용자사업 대출 금융 기관에 당해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

4. 자금 집행 및 정산단계

경영체

- 보조사업자는 농업기계 구입이 완료되면, 시군(읍·면·동)에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보조금을 신청

시군

-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교부 신청서를 접수하여 기종, 규격 등 사업자 선정시와 동일한 농업기계임을 확인하고 보조금 집행 [별지 제4호 서식]
- 시군에서는 사업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완료보고서를 도에 제출 [별지 제5호 서식]

5. 사후관리단계

시군

- 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하여 보조사업자에게 농업기계 안전사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

[별지 제2호 서식]

2026년 논 타작물 생력화장비 지원사업
대상자 선정 결과

경 영 체 현 황		기종 (제조사)	규격 (형식명)	구입 단가	사 업 비(천원)			
경영 체명	주 소				계	도비 (15%)	시군비 (35%)	자부담 (50%)
계								
	읍면 리 번지							

[별지 3호 서식]

2026년 논 타작물 생력화장비 지원사업
세부사업 변경 신청서

경영 체명	주 소	당 초		변 경			사 업 비(천원)			
		기종 (제조사)	규격 (형식명)	기종 (제조사)	규격 (형식명)	구입 가격	계	도비 (15%)	시군비 (35%)	자부담 (50%)

[별지 제4호 서식]

2026년 논 타작물 생력화장비 지원사업 현지 확인서

경 영 체 현 황		기종명 (제조사)	구입 일자	사 업 비(천원)			
경영 체명	주 소			계 (100%)	도비 (15%)	시군비 (35%)	자부담 (50%)
계							
			'24 . .				

※ 반드시 농업기계 및 표지부착 사진 첨부

위와 같이 논 타작물 생력화장비 구입을 완료하였음을 확인 합니다.

확인자 직급 :

성명 : ㉠

2026년 논 타작물 생력화장비 지원사업 완료 보고

(단위 : 대, 천원)

시군	사 업 계 획				집 행 실 적				집 행 잔 액		
	계획	사 업 비			실적	사 업 비			사 업 비		
		계	도 비	시군비		계	도 비	시군비	계	도 비	시군비

기종명	경영체수 (호)	사업량 (대)	사업비(천원)				비고
			계	도 비	시군비	자부담	
계							
00파종기							

※ 도 제출일 : 농업기계 공급완료 후 15일 이내